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-1463호

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17호(1996.11.20.)로 최초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12호(2019.07.04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동 작 구 청 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노량진로 74, 유한양행 3층, ☎ 02-820-9734)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동작구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	87,123	-	87,123	1996.11.20. (서울시고시 제1996-317호)	

2)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)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마. 기타사항 :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-1469호

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(의제)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(2020.06.25.)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【제목, 내용, 주소, 성명(날인)】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동 작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20. 10. 15. ~ 2019. 10. 29. (공고일 포함 15일간)

나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0-3번지 일대
- 3) 사업면적 : 38,017㎡
- 4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㉠ 성 명 :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정하
 ㉡ 주 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길 34(노량진동)
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 지하5층/지상28층, 9개동 727세대(임대 130세대 포함)
7) 정비기반시설등 : 도로 6,968.5㎡, 공원 1,464㎡

다. 공람장소 :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(☎02-820-9814),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02-822-3326)

라. 의견서 제출 : 동작구청 도시개발과

마. 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

의견서

(No. _____)

구	분	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													
공	람	2020. 10. 15. ~ 2020. 10. 29.													
의 인	견 적	제 사	출 자	항	성	명	생	년	월	일					
					소	유	권	현	황	서울시	동작구	동	번	지	호
					현	주	소								
					전	화	번	호	(휴대폰 :)						
의	견	제	목												
의	견	내	용												

2020. . .
의견제출자 :

(서명 또는 날인)

동작구청장 귀하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-1474호

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·송달 공고

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과-21074, 21075, 21076(2020.9.24.)호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동작구청장